

##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//9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년 10월 일  
제출자 : 제천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우리지역에 접목하기 위해  
서는 수시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됨에 따라
- 지역출신 인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하  
여 시정발전연구 및 정책개발의 자문역으로 활용

### 2. 주요내용

-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 시정 주요 정책개발 수행(안 제2조)
- 명예연구원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천시장이  
위·해촉(안 제3조 및 제7조)
-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1회 종합평가 보고회 개최(안  
제5조)
- 예산범위 내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수당 지급(안 제6조)

### 3. 의안 전문 : 붙임

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### 5. 관계법령 : 붙임

- 첨부 1. 근거법령 1부.  
2. 입법예고 사본 1부.

##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지역출신 인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로 시정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제천시 명예 연구원(이하 “명예연구원”이라 한다) 을 위촉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명예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
2.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자문
3. 지역현안사업 등 연구과제 자문
4. 기타 시정 주요 정책 개발

**제3조 (자격 및 위촉)** ① 명예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중앙부처(5급이상) 공직자 및 출연기관 연구원
  2. 제천시 지역에 관심이 많은 대학교 교수 등 박사학위 소지자
  3. 충북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위원
  4. 기타시정 발전 연구 및 정책 개발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② 명예연구원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한다.

**제4조(임기)** 명예연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명예연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운영 및 연구성과 평가회)** ① 명예연구원은 시정현안 사항과 주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
② 지정된 명예연구원의 연구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말 연구 성과 평가회를 개최한다  
③ 평가결과 우수 명예연구원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다. 다만 제천시의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

있다

④ 연구성과 평가회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요사항에 대해  
서는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

**제6조(수당 지급)** 명예연구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 
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

**제7조(해촉)** 위촉된 명예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천  
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

- ① 질병 또는 사망으로 연구 활동이 불가능 한 자
- ②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자
- ③ 연구 실적이 미흡한 자

**제8조(홍보)** 시장은 연구위원의 연구 내용을 관내에 널리 홍보한다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지방자치법

[일부개정 2007.5.17 법률 제8435호]

**제22조 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

제천시 공고 제 2007 - 1145

제천시명예연구원 위촉·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07. 8 . 31

제 천 시 장

###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·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조례명 :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## 2. 제정이유

-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우리지역에 접목하기 위해 서는 수시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됨에 따라
- 지역출신 인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시정발전연구 및 정책개발의 자문역으로 활용

#### 3. 주요내용

-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 시정 주요 정책개발 수행(안 제2조)
- 명예연구원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천시장이 위·해촉(안 제3조 및 제7조)
-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1회 종합평가보고회 개최(안 제5조)
- 예산범위 내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수당 지급(안 제6조)

#### 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 월 21일까지 제천시장 (참조 전략사업팀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 - 5041, FAX 641 - 5049 담당자 : 고수환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

##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

의견제출자	제출의견		조치내용				
Y-뉴스실장 양승달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● 의견내용 : 제3조 (자격 및 위촉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 padding: 5px; vertical-align: top;"> <b>조례안(입법예고)</b> </td><td style="width: 33%; padding: 5px; vertical-align: top;"> <b>의견제출(결과: 반영)</b> 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 vertical-align: top;"> <u>제3조 (자격 및 위촉)</u>  <u>4. 기타 분야별 전문</u>  <u>가로서 유관기관·단</u>  <u>체장의 추천을 받은</u>  <u>자</u> </td><td style="padding: 5px; vertical-align: top;"> <u>제3조 (자격 및 위촉)</u>  <u>4. 기타시정 발전</u>  <u>연구 및 정책 개발등</u>  <u>에 필요하다고 인정</u>  <u>하는 자</u> </td></tr> </table>		<b>조례안(입법예고)</b>	<b>의견제출(결과: 반영)</b>	<u>제3조 (자격 및 위촉)</u> <u>4. 기타 분야별 전문</u> <u>가로서 유관기관·단</u> <u>체장의 추천을 받은</u> <u>자</u>	<u>제3조 (자격 및 위촉)</u> <u>4. 기타시정 발전</u> <u>연구 및 정책 개발등</u> <u>에 필요하다고 인정</u> <u>하는 자</u>	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• 反映</p> <p>명예연구원의 범위 확대 및 시장의 명예연구원 위촉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적극 수용</p>
<b>조례안(입법예고)</b>	<b>의견제출(결과: 반영)</b>						
<u>제3조 (자격 및 위촉)</u> <u>4. 기타 분야별 전문</u> <u>가로서 유관기관·단</u> <u>체장의 추천을 받은</u> <u>자</u>	<u>제3조 (자격 및 위촉)</u> <u>4. 기타시정 발전</u> <u>연구 및 정책 개발등</u> <u>에 필요하다고 인정</u> <u>하는 자</u>						

## 조례·규칙심의회 의결결과

의안명	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·운영에 관한 조례안
의안번호	제54호
의안구분	조례 제정안
제출자	전략사업팀장
심의안건	<p><b>□ 제안 이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우리지역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됨에 따라</li> <li>○ 지역출신 인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시정발전연구 및 정책개발의 자문역으로 활용</li> </ul> <p><b>□ 주요 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 시정 주요 정책개발 수행(안 제2조)</li> <li>○ 명예연구원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천시장이 위·해촉(안 제3조 및 제7조)</li> <li>○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(안 제4조)</li> <li>○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1회 종합평가보고회 개최(안 제5조)</li> <li>○ 예산범위 내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수당 지급(안 제6조)</li> </ul>
의결일	2007. 10. 11(목) 09:00-10:30
의결내용	원안가결( ), 수정가결( 0 ), 부결( ), 심의보류( )
수정통과 시 수정내용	제2조제3호중 “지역현안사업 등 연구과제”를 “지역현안사업 등 연구과제 자문”으로 한다.
비고	